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10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조응천·송재호·기동민

정일영 · 박홍근 · 최인호

김승원 · 김회재 · 오영환

이성만 · 이상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.

현행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 판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「형법」 제258조(중상해)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인데 반하여, 법정형이 더 높은 「형법」 제258조의2제2항(특수중상해)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물관할 상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로 인해 실제 일선법원은 공소장에 「형법」 제258조의2(특수상해)가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면 단독재판부에 배당을 하기도 하고,

경우에 따라 사건 경중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

이에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「형법」 제258조의2에서 제2항(특수중상해)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(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).

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"제258조의2"를 "제258조의2제1항"으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합의부의 심판권) ① 지방	제32조(합의부의 심판권) ①
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	
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	
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사형, 무기 또는 단기 1년	3
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	
당하는 사건. 다만, 다음 각	
목의 사건은 제외한다.	
가. 「형법」 <u>제258조의2</u> , 제	가 <u>제258조의2제1</u>
331조, 제332조(제331조의	<u>항</u>
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와	
그 각 미수죄, 제350조의2	
와 그 미수죄, 제363조에	
해당하는 사건	
나. ~ 사. (생 략)	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